

한국체육대학교 국제교류협력 규정

제정 2011. 1.25. 규칙 제543호
개정 2011.12.26. 규칙 제581호
개정 2015. 4. 2. 규칙 제6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외국기관”이라 한다)과 학술·체육교류 협정(이하 “교류협정”이라 한다) 체결 및 국제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가 외국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거나 기타 교류를 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국제교류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외국기관과의 학술·체육교류협정을 체결하거나, 교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훈련처장, 대외협력단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2>

② 위원장은 대외협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2>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국제교류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4.2>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계획
2. 교직원, 학생, 연구생 등의 교류
3. 국제학술·체육교류 협정 체결
4. 기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국제교류협정 체결

제7조(대상기준) 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기관으로 한다.

1. 본교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기관
2. 본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기관
3. 본교 육성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외국기관
4. 기타 대학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체결권자) 교류협정은 총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체결절차) ① 교류협정은 대외협력단에서 주관하여 체결한다 <개정 2015.4.2>

② 각 부서에서 교류협정 체결을 요청할 시에는 <별지 제1호>에 의거 협정에 필요한 서류를 대외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③ 외국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체결목적, 기관현황, 협정내용, 협정서(안)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한다.

제10조(보고 및 관리) ① 협정서의 언어는 영어 또는 자국어를 사용하고 쌍방기관이 협정서 원본 각 1부를 보관한다.

② 교류협정에 관련된 행정업무와 문서는 대외협력단에서 처리한다. <개

정 2015.4.2>

제4장 교직원 및 학생의 교류

제11조(교류의 종류)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기관(이하 “협정기관”이라 한다)에 교류할 교직원 및 학생의 교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 학술·문화교류
2. 교환학생 교류
3. 학생 합동훈련
4. 기타 교직원 및 학생 교류

제12조(교류시기 및 기간) ① 협정기관과의 문화교류는 방학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류기간은 양 기관의 교류사업별 일정에 의한다. 단, 교환학생 교류는 1년 단위로 한다.

제13조(자격 및 선발) 협정기관에 교류할 교직원 및 학생의 선발은 대외협력단에서 총괄하되, 부서단위 교류는 부서별 자체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5.4.2>

제14조(경비지원 등) ① 협정기관에 교류하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는 사업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협정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본교를 방문하는 협정기관의 방문자 경비는 체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대회 참가 등 공식적인 초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문화교류 경비는 훈련처의 사업계획에 의한다.

④ 교류경비를 지원받아 교류에 참가한 교직원 및 학생은 교류종료 후 7일 이내에 교류결과보고서<별지 제2호>를 대외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합동훈련, 문화교류 등 소속부서에서 실시하는 교류는 자체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5.4.2>

제15조(외국인숙소 이용 등) ① 외국인숙소의 이용은 협정기관, 인원, 일정,

사용신청 등을 고려하여 대외협력단에서 배정한다. <개정 2015.4.2>

② 외국인숙소 및 생활관 식당 이용 등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7일 전까지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비협정기관과의 교류) 비 협정기관과의 교류 시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5장 국제홍보위원

제17조(국제홍보위원) ① 본교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국제홍보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국제홍보위원은 체육이나 교육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또는 주요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국제홍보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임무) 국제홍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유학생 유치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외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9조(임명의 취소 또는 해촉) 국제홍보위원이 재임 중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543호, 2011.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81호, 2011. 1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71호, 2015.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국제교류협정 체결 신청서

체결기관	
체결목적	
기관현황	
협정내용	
협정서(안)	별도 첨부
<p>한국체육대학교 국제교류협력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국제교류협정 체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부서장 ○○○(서명)</p> <p>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p>	
※ 붙임 : 국제교류협정서(안)	

<별지 2>

국제교류 결과 보고서

교류종류			
교류기간		교류국	
교 류 자			
주요일정			
개선 또는 건의사항			
<p>한국체육대학교 국제교류협력규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국제교류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20</p> <p>부서장 ○ ○ ○ (서명)</p> <p>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p>			
※ 관련서류 첨부			